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발 의 자 : 김동율 의원(1명)
찬 성 자 : 유광상·문종철·김희걸·
김동욱·오봉수·김춘수·
진두생·최호정·이순자·
박마루·김창원·권미경·
오승록·이병해·김광수(도봉)·
한명희·최조웅·이상묵·
김영한·강감창·김용석(서초)·
김용석(도봉)·서윤기·김제리·
조규영·김창수·박호근 의원
(27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 제목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킴.(안 제6조)

나.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대상을 명확히 함. (안 제6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비대상 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“건설공사의 분할발주”를 “건설공사의 분할계약”으로 하고, 본문 내용 중 “발주할 수”를 “계약할 수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의 본문 내용 중 “공사로서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”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

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<u>건설공사의 분할발주</u>)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<u>발주할 수</u> 있 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·안전·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<u>공사</u> <u>로서</u>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공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《신설》</u></p>	<p>제6조 (<u>건설공사의 분할계약</u>) ① --- ----- ----- <u>계약할 수</u> -- --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다음</u> <u>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</u> <u>로서</u>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</u> <u>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</u> <u>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</u> <u>명확히 구분되는 공사</u></p>